

2022

알기 쉬운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길라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발간 목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소관하는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용 조사 및 방송실시결과 접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용 준수, 방송실시결과 제출 등 방송 실시에 따른 법규 준수사항을 안내하여 향후 법규 위반을 방지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

| 목 차 | CONTENTS

I 관련 법령

- 1. 주요 법령 및 행정규칙 1
- 2. 법령 주요 내용..... 2

II 방송사업자 등 분류 체계

- 1. 방송의 정의..... 4
- 2. 방송사업 등의 정의..... 4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 등 업무분장..... 6
-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자..... 6
-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8

III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법규 위반 조사(2022년)

- 1. 개요..... 11
- 2. 개정 주요내용(2022.1.1. 시행)..... 11
- 3. 조사 항목..... 12
 -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13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14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18
 -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 19
- 4.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일람표..... 21
- 5. 방송편성비율 산정 제외 방송시간..... 22

IV 방송실시결과 제출

- 1. 개 요..... 23
- 2. 제출 자료 목록 및 제출 기한..... 23
- 3. 사업자별 방송실시결과 작성 요령..... 23

V 과태료 부과

1. 개 요.....	24
2. 과태료 부과 절차	24
3.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	28
4.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30

VI 주요 위반사례.....31

[참고] 사업자별 방송실시결과 작성 요령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4
● 위성방송사업자.....	42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9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57
● 음악유선방송사업자.....	58
● 전광판방송사업자.....	59

[부록]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관련 법령

● 방송법.....	60
● 방송법 시행령.....	63
● 방송법 시행규칙.....	67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68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69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70
● 방송업무처리지침.....	79

I

관련 법령

1. 주요 법령 및 행정규칙

- 방송법 / 방송법 시행령 / 방송법 시행규칙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 방송업무처리지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본 책자의 일부에서는 편의를 위하여 위 법규의 명칭을 아래와 같이 축약하여 사용함

- 「방송법」 → 법
- 「방송법 시행령」 → 시행령
- 「방송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IPTV법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 IPTV법 시행령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 고시
- 「방송업무처리지침」 → 지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질서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질서법 시행령

○ 본 책자는 2022년부터 적용되는 편성규제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 이전의 편성규제에 대해서는 「알기쉬운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길라잡이」 2020년 발행본을 참고하기 바람

2. 법령 주요 내용

☒ 권한의 위임(법 제103조제1항 및 시행령 제68조제1항)

- 방송편성비율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

☒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법규 위반 조사

- 주된 방송분야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 중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함(법 제69조제4항 및 시행령 제50조제4항)
 -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법 제69조제5항 및 시행령 제50조제5항)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함(법 제71조제1항 및 시행령 제57조제1항)
 - 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방송시간 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방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함(법 제71조제2항 및 시행령 제57조제2항)
 -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50%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일정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함(법 제71조제3항 및 시행령 제57조제4항)

- 방송사업자(특정한 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한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일정 비율 이상 초과하여 편성하여서는 안됨(법 제71조제4항 및 시행령 제57조제5항)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영화는 제외)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함(법 제72조제1항 및 시행령 제58조제1항)

-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

-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함(법 제73조제4항 및 시행령 제59조제3항)

방송실시결과 제출

- 방송사업자 등은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월간 방송실시결과를 작성하여 일정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8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1,2항)
- 방송사업자는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함(법 제83조제2항)

과태료 부과(법 제108조제1항 및 시행령 제69조)

-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위반한 사업자 및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II

방송사업자 등 분류 체계

1. 방송의 정의

☒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것

- (텔레비전방송)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 (라디오방송)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 (데이터방송)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제외)
-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2. 방송사업 등의 정의

☒ 방송사업

- (지상파방송사업)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 (종합유선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 (위성방송사업)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 (방송채널사용사업)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 방송 관련 사업

- (중계유선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
 - (중계유선방송)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하는 방송) 등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하는 것
- (음악유선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
 - (음악유선방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는 것
- (전광판방송사업) 전광판방송을 행하는 사업
 - (전광판방송)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 등 업무분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보도제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보도)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음악유선방송사업자	-
전광판방송사업자	-

※ 이하 이 책에서 다루는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용 및 방송실시결과 제출 등의 법규 준수사항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소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SO)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 MSO*(달라이브, 씨엠비, 엘지헬로비전, SKB, 현대HCN) 및 개별 SO 등

* Multiple System Operator(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2개 이상의 케이블TV를 소유·운영)

☒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 KTS카이라이프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PP)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 (과기정통부 등록) 일반PP, (과기정통부 승인) 홈쇼핑PP, (방통위 승인) 종합편성·보도PP

☑ 중계유선방송사업자(Relay Operator, RO)

-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 음악유선방송사업자

-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 전광판방송사업자

- 전광판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 본 책자의 일부에서는 편의를 위하여 각 방송사업자 등의 명칭을 아래와 같이 축약하여 사용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SO
-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PP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중계유선
- 음악유선방송사업자 → 음악유선
- 전광판방송사업자 → 전광판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 불문, 「전파법」 제10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제공하기 위하여 IPTV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IPTV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을 하기 위하여 IPTV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 방송법과의 관계

- IPTV법 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제4, 5항 및 IPTV법 시행령 제20조(「방송법 시행령」의 준용)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 편성 및 방송실시결과와 제출은 방송법 준용

○ IPTV법 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 ④ 「방송법」 제69조,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 제76조의3, 제76조의5,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의2 및 제83조는 콘텐츠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 국내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광고, 협찬고지, 프로그램의 공급,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재송신, 방송내용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 ⑤ 제4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와 제출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 IPTV법 시행령 제20조(「방송법 시행령」의 준용)

- 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2조의2를 준용하되, 제16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의 전문편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 ④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7조를 준용하되,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의 비율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 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 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광고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9조를 준용하되,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광고의 허용범위 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부칙 제2008-135호(2008.12.31.)
-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보아 해당 고시 규정을 적용한다.

III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법규 위반 조사(2022년)

※ 방송법 시행령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2022.1.1. 시행)으로 편성규제 일부항목이 변경되었으며, 본 책자는 2022년부터 적용되는 편성규제를 기재함

1. 개 요

- 방송사에서 매월 또는 매분기 제출하는 방송실시결과 자료 등을 토대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 여부 조사

2. 개정 주요내용(2022.1.1. 시행)

구 분	개정 내용
주된 방송분야	•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비율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 •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월'에서 '매반기'로 변경
국내제작 프로그램	•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반기'에서 '연간'으로 변경
1개국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 특정한 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한 PP의 경우 1개국 영화·애니·대중음악 수입물 편성규제 예외 • 편성비율 상한을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 •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반기'에서 '연간'으로 변경 • 예외조항을 '매반기 각 2편 또는 각 120분 이내로 편성한 경우'에서 '연간 각 4편 또는 각 240분 이내로 편성한 경우'로 변경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인용조문 현행화 등

3. 조사 항목

☒ (요약) 전체 의무편성비율 준수 항목 (개정, 2022.1.1. 시행)

항 목	적용기간	내 용
주된 방송분야	반기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전체 방송시간 중 주편성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연간	방송사업자의 전체 방송시간 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연간	방송사업자의 전체 영화 방송시간 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의 편성비율
	연간	방송사업자의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연간	방송사업자의 전체 대중음악 방송시간 중 국내에서 제작된 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연간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50%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전체 방송시간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비율
	연간	방송사업자가 수입한 전체 외국의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반기	방송사업자의 전체 방송시간 중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비상업적 공익광고	월간	국가나 비영리기관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무료로 방송하는 광고 또는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편성하는 광고의 편성비율

☑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주편성)의 방송프로그램을 **매반기**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함
 - 주된 방송분야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 해당 프로그램이 해당 채널의 주된 방송분야에 적합한지 여부를 프로그램의 장르, 목적, 내용 등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함
 - 주편성비율 산정방법 :
$$\frac{(\text{주편성 방송시간})}{(\text{주편성 방송시간} + \text{부편성 방송시간})} \times 100\%$$
 - ※ 안내방송·필러물·광고시간 제외하여 비율 산정

- 방송사업자별 편성비율 기준 -

(시행령 제50조제4항, 개정, 2022.1.1. 시행)

- (SO/위성/PP) 해당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 (데이터방송채널)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상

-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
 -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방송사업자는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함
- 세부 준수항목

항 목	내 용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비율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비율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비율

※ (1)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2)국내제작 영화 규정을, 애니메이션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3)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규정을, 대중음악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4)국내제작 대중음악 규정을 각각 적용함

(1)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 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함

- 방송사업자별 편성비율 기준 -

(고시 제3조제1항, 개정, 2022.1.1. 시행)

- (SO/위성)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 (PP)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 (지상파PP)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및 절차는 고시 제5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및 절차)에 따름

(2) 국내제작 영화 편성

- 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 방송시간 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함

- 방송사업자별 편성비율 기준 -

(고시 제3조제2항)

- (SO/위성/PP)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 (종교전문편성) 해당 채널별로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4 이상
 - ※ 시행령에서는 교육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시에서는 교육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 해당 편성비율은 연간 영화 편성이 있는 경우에 산정되는 비율임
- 국내제작 영화의 인정기준은 고시 제6조(국내제작 영화의 인정기준)에 따름

(3)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 애니메이션의 정의(고시 제3조제3항)
 -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2D, 3D, CG, 스톱모션 등 다양한 기법과 매체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움직이는 영상 이미지를 창출하는 작업물
- 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함

- 방송사업자별 편성비율 기준 -

(고시 제3조제3항)

- (SO/위성/PP)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 (교육전문편성)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100분의 8 이상
- (종교전문편성)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100분의 4 이상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다음 시간대(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50%로 인정(고시 제11조제2항)
 - (평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해당 편성비율은 연간 애니메이션 편성이 있는 경우에 산정되는 비율임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는 고시 제7조(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에 따름

(4) 국내제작 대중음악 편성

- 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별로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시간 중 국내에서 제작된 대중음악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함
 - 다만,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둘 이상의 음악전문채널을 운영하는 오디오 부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는 사업자별로 적용

- 방송사업자별 편성비율 기준 -

(고시 제3조제4항)

- (SO/위성/PP)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 해당 편성비율은 연간 대중음악 편성이 있는 경우에 산정되는 비율임

(5)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50%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애니PP)로서 방송사업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일정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 해당 방송사업자군 내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최초로 편성하는 경우 이를 신규편성으로 인정

- 방송사업자군 분류 -

(고시 제4조제1항)

- (1) 지상파방송사업자(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
-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3)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100분의 50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사업매출액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편성비율 기준 -

(고시 제4조제5항 및 제6항, 개정, 2022.1.1. 시행)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6 이상
-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8 이상
- (200억원 이상)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0 이상

※ 각호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방송법」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의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다음 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 편성시간의 150%로 인정(고시 제11조제3항)
- (평일) 7시~9시, 17시~20시
- (주말 및 공휴일) 7시30분~11시, 14시~20시

(6)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

- 방송사업자*는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함

* 특정한 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
(2022.1.1. 시행)

- 방송사업자별 편성비율 기준 -

(고시 제8조, 개정, 2022.1.1. 시행)

- (SO/위성/PP)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90 이하

-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연간 각 4편 또는 각 240분 이내로 편성한 방송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개정, 2022.1.1. 시행)

※ 수입한 외국의 영화·애니메이션 국적 구별기준은 고시 제8조의2 참고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채널별로 **매반기**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영화 제외)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함

- 방송사업자별 편성비율 기준 -

(고시 제9조제1항)

- (지상파PP) 해당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2 이상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은 고시 제9조의2(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참고

☑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

-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편성하여야 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아래 두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무료로 방송하는 광고
 -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편성하는 광고

- (참고) 공익광고의 정의 -

- 공익광고는 기업이나 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로서 정부 및 지자체의 정부광고, 사회문제 개선을 위한 코바코 공익광고, 기업의 공익적 내용이 포함된 광고 등을 의미
 - 그러나 「방송법」 및 시행령에서 의무편성 대상으로 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협의의 개념으로서 공익광고 가운데 제작주체, 광고내용, 광고비용 등이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

〈공익광고 비교〉

구 분	공익적 내용의 상업광고	정부광고	공익성 캠페인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주체	기업, 개인 등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지자체,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	정부, 지자체,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방송사
송출비용	유료	유료	유료	무료
근거법령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및 제60조 제1항	「정부기관 및 공공 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방송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
비고	광고, 협찬	광고	협찬	광고

※ 위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알기쉬운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을 인용함

-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매월**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함

－ 사업자별 편성비율 기준(고시 제10조) －

- 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으로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 (SO/위성)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0분의 0.5 이상
- (PP)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별 의무편성비율 상이
 - － (2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0.5 이상
 - － (400억원 이상)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0분의 1 이상

- 방송구역이 국외이거나 재외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방송프로그램 단위로 시청자가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은 제외함(고시 제10조)
- 방송사업자가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른 다음 시간대(주시청시간대)에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50%로 인정(고시 제11조제8항)
 - － (평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가 아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

- (전광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 :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4.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일람표

구 분 (대상기간)		대 상		의무 편성비율
주된 방송분야 방송프로그램 (반기)		TV·라디오	SO·위성·PP	70%↑
			데이터	60%↑
국내 제작 방송 프로그램	①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연간)	TV·라디오	SO·위성	50%↑
			PP (지상파PP 제외)	40%↑
			지상파PP	60%↑
	②국내제작 영화 (연간)	TV	SO·위성·PP	20%↑
			종교전문편성	4%↑
	③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연간)	TV	SO·위성·PP	30%↑
			교육전문편성	8%↑
			종교전문편성	4%↑
	④국내제작 대중음악 (연간)		SO·위성·PP (둘 이상의 음악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오디오 부문 PP는 사업자별로 적용)	60%↑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연간)	TV	연간 50% 이상 편성 애니PP 중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50↑~100↓/150↓/200↓/200억원↑	0.3/0.6/ 0.8/1.0%↑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 대중음악(연간)		SO·위성·PP (단, 연간 각 4편 또는 각 240분 이내로 편성하거나 특정한 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한 PP는 제외)	90%↓
○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영화전문PP는 제②항 영화, 애니메이션 전문PP는 제③항 애니메이션, 대중음악PP는 제④항 대중음악을 각각 적용한다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반기)		TV (영화제외)	지상파PP	3.2%↑
비상업적 공익광고 (월)			SO·위성 중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20억원↑	0.05%↑
			PP 중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20↑~400↓/400억원↑	0.05/ 0.1%↑
			전광판 방송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 규정에 의한 비율)	시·도 조례 참고

5. 방송편성비율 산정 제외 방송시간

☒ 다음의 방송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재난방송 또는 비상방송,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 또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은 제외할 수 있음 (고시 제11조제4항)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비율
-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비율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 재난방송 또는 비상방송 기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름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 기준

-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 행사」(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3조에 따름

IV

방송실시결과 제출

1. 개 요

- 방송사업자 등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방송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방송실시결과를 일정 기한 내에 소관 지역전파관리소에 제출하여야 함
※ PP가 방송실시결과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미제출한 경우 과기정통부는 등록 취소 가능(법 제18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제2항, '20.6월 시행)
- 방송사업자는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함

2. 제출 자료 목록 및 제출 기한

☒ 제출 자료 목록

- 월간 방송실시 결과
- (전문편성채널의 경우) 주된 방송분야 방송프로그램을 음영표시한 방송편성표

☒ 제출 기한 (방송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SO/위성/PP) 매월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는 PP사업자로 적용
- (중계유선/음악유선/전광판)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3. 사업자별 방송실시결과 작성 요령

☒ 참고자료 붙임 (35~59쪽)

과태료 부과

1. 개 요

-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위반한 사업자 또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비율 위반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에서 과태료 부과

2. 과태료 부과 절차

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지침 제9조, 제12조)

- 사전통지
 -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해당 사업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사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 포함)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함

- ①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②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 ③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④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 ⑤ 질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⑤의2 질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질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질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 ⑥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⑦ 당초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이 감경된 과태료 납부 고지서. 이 경우 납부 고지서에 표시된 과태료 납부 기한은 의견 제출 기한과 동일하게 통보
- ⑧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의견제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당초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이 감경된 과태료 납부 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의견제출 기한과 동일하여야 함

● 의견제출

- 사업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음
- 사업자가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 담당 공무원은 의견의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사업자 대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 종료

● 의견검토

- 사업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자가 제출한 의견이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 ① 질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에 해당하여 그 질서위반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 ② 질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 해당하여 사업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 중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질서위반행위

2) 과태료 부과 (지침 제10조)

- 중앙전파관리소(본소)는 사업자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 과태료 부과는 아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사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 포함)으로 하여야 함

- ①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② 과태료 부과 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 ③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④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 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 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⑥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 ⑦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이의제기 및 법원 통보(지침 제13조, 제14조)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사업자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해당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 중앙전파관리소(본소)는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함
 - 단, 아래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함
 - 사업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 사업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관할 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는 경우, 중앙전파관리소(본소)는 이 사실을 즉시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해당 사실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사업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음

3.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

☑ 법령 근거 조문

- **(법)**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 제69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 8. 제7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 9. 제7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편성비율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 10. 제73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 17.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또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18.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4]와 같다.

☑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위반 항목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만원)
사. 법 제6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경우	법 제108조 제1항제4호	
3) 법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된 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은 경우		300
4) 법 제69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방송프로그램을 부수적으로 편성한 경우		500
파.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경우	법 제108조 제1항제8호	
1) 법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이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 편성하지 않은 경우		1,000
2) 법 제7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이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비율 이상 편성하지 않거나, 법 제71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이 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지 않은 경우		1,000
3) 법 제71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이 영 제57조제5항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편성한 경우		500
하. 법 제7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편성비율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경우	법 제108조 제1항제9호	
1) 법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이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편성하지 않은 경우		1,000
거. 법 제73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경우	법 제108조 제1항제10호	
4) 법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한 경우		500
고.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한 경우 또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8조 제1항제17호	500
노. 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 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8조 제1항제18호	300

4.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① 과태료 부과기준(지침 별표3)

위반 행위	위반 정도	과태료 부과액
방송법 시행령 별표4 개별기준의 제사호 3)~4)목, 제파호 1)~3)목, 제하호 1)목	1. 법정의무편성 비율의 5% 이하 또는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기준금액의 50% 감경
	2. 법정의무편성 비율의 5% 초과 ~ 10% 이하	기준금액
	3. 법정의무편성 비율의 10% 초과 ~ 20% 이하	기준금액의 25% 가산
	4. 법정의무편성 비율의 20% 초과 ~ 30% 이하	기준금액의 50% 가산
	5. 법정의무편성 비율의 30% 초과 ~ 40% 이하	기준금액의 75% 가산
	6. 법정의무편성 비율의 40% 초과	기준금액의 100% 가산
시행령 별표4 개별기준의 제고호 및 제노호	1. 위반횟수가 1회 또는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기준금액의 50% 감경
	2. 위반횟수가 2회시	기준금액
	3. 위반횟수가 3회 이상시	기준금액의 100% 가산

※ 비교 : 기준금액은 시행령 별표4의 위반행위별 부과금액을 말한다.

②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직전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단, 가산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②항에 따른 ‘1년 이내의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월과 분기는 제외

④ 제①항의 위반횟수 산정기준은 위반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를 기준으로 함

VI

주요 위반사례

1. 전문편성 채널에서 주된 방송분야와 무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주편성으로 편성한 경우

-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주편성)의 방송프로그램을 매반기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합니다.(방송법 제6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개정, 2022.1.1. 시행)
 - (SO/위성/PP) 70% 이상 / (데이터) 60% 이상
- 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와 무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주편성으로 편성한 경우, 중앙전파관리소는 그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지도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 재산정한 주편성 비율이 의무편성비율 미만인 경우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기준금액 : 300만원
 - ※ 위반비율 등에 따라 50% 감경 또는 최대 100% 가산 가능
- 만약 주된 방송분야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된 방송분야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2.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특정 국가에서만 수입하여 편성한 경우

- 방송사업자*는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습니다.(방송법 제7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개정, 2022.1.1. 시행)

* 단, 특정한 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한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는 제외 (2022.1.1. 시행)

- 만약 이를 위반하여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특정국가에서만 수입하여 편성한다면 의무편성비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기준금액 : 500만원

※ 위반비율 등에 따라 50% 감경 또는 최대 100% 가산 가능

- 단,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연간 각 4편 또는 각 240분 이내로 편성한 방송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8조, 개정, 2022.1.1. 시행)

- 이 때, 만약 동일한 영화를 다른 시각에 5회 방송한 경우 5편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것이며, 이는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8조의 단서조항(4편 이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연간 방영한 영화가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 1편이 전부인 경우

- 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방송시간 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방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해야 합니다.(방송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 (영화) 20% 이상 / (애니메이션) 30% 이상 / (대중음악) 60% 이상
- 만약 연간 영화를 1편만 방영하였더라도 그 1편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인 경우,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이 0%이므로 의무편성비율 위반이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기준금액 : 1,000만원
 - ※ 위반비율 등에 따라 50% 감경 또는 최대 100% 가산 가능

4. 방송실시결과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방송사업자 등은 방송실시결과를 제출기한 내에 소관 지역전파관리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방송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SO · 위성 · PP) 매월 종료 후 다음달 20일까지
 - (중계유선 · 전광판 · 음악유선)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 만약 제출기한 내에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기준금액 : 500만원
 - ※ 위반횟수 등에 따라 50% 감경 또는 최대 100% 가산 가능

참고

사업자별 방송실시결과 작성 요령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월 방송실시 결과(종합유선방송사업자)

(4쪽 중 제1쪽)

1. 사업개요

법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운영채널(개)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채널번호)	

- 운영채널(개) : 운영 중인 지역채널과 직접사용채널 개수를 합하여 기재
-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채널번호) : 지역채널 번호와 운영 중인 직접사용채널 번호를 모두 기재

2. 지역채널

가. 초방/순환

구 분	전체방송	초 방	순 환
방송시간(분)	①	②	③
백분율	100%	④ %	⑤ %

- 방송시간
 - ① 전체방송 : 월간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의 총합임
※ '3. 직접사용채널'의 전체 방송시간과 동일함
 - ② 초방 : 해당 채널에서 최초로 방송된 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 ③ 순환 : 해당 채널에서 2회 이상 방송된 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 이전에 방송된 프로그램을 해당 월에 다시 편성하는 경우도 순환임
- 백분율
 - ④ 초방 : ②/①, ⑤ 순환 : ③/①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나. 방송분야

구 분	전체방송	시청자 자체제작	지역 생활정보	자치단체 홍보	프로그램 안내	기타
방송시간(분)						
백분율	100%	%	%	%	%	%

○ 백분율

- 시청자 자체제작, 지역 생활정보, 자치단체 홍보, 프로그램 안내, 기타의 백분율의 합계는 100%임

3. 직접사용채널

- 직접사용채널이 복수인 경우, 본 항 이하를 채널별로 분리하여 각각 채널번호를 기재하고 채널별로 작성
- 직접사용채널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본 항 이하를 공란으로 남겨둬

가. 방송분야

구 분	전체방송	교양	오락
방송시간(분)	①	②	③
백분율	100%	④ %	⑤ %
주시청시간대(분)	⑥	⑦	⑧
백분율	100%	⑨ %	⑩ %

○ 방송시간

- ① 전체방송 : 월간 전체 방송시간의 총합임
- ② 교양 : 월간 교양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③ 오락 : 월간 오락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백분율 : ④ 교양 : ②/①, ⑤ 오락 : ③/①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 주시청시간대

- ⑥ 전체방송 : 월간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합계임
- ⑦ 교양 : 월간 주시청시간대 교양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⑧ 오락 : 월간 주시청시간대 오락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 주시청시간대는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음
 - 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주시청시간대 백분율 : ⑨ 교양 : ⑦/⑥, ⑩ 오락 : ⑧/⑥

※ ⑨와 ⑩의 합계는 100%임

나. 국내제작물

1) 전체방송

구 분	전체방송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방송시간(분)	①	②	③
백분율	100%	④ %	⑤ %

○ 방송시간

① 전체방송 : 월간 전체 방송시간의 총합임

※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 의거 전체 방송시간에서 제외되는 프로그램 편성한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방송시간을 제외한 방송시간을 기재함

② 국내제작물 :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③ 외국제작물 : 외국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외국의 특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국내에서 단순 더빙만을 삽입하는 경우 또는 단순(녹화) 중계 방송하는 경우에는 모두 외국제작으로 봄

○ 백분율 :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4쪽 중 제2쪽)

2) 영 화

구 분	영화전체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방송시간(분)	①	②	③
백분율	100%	④ %	⑤ %

○ 방송시간

① 영화전체 : 월간 전체 영화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합계임

② 국내제작물 : 월간 전체 국내제작 영화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국내제작 영화의 기준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6조 참조

③ 외국제작물 : 월간 전체 외국제작 영화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①=②+③

○ 백분율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3) 애니메이션

구 분	애니메이션 전체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방송시간(분)	①	②	②	③
백분율	100%	④ %	④ %	⑤ %

○ 방송시간

- ① 애니메이션 전체 : 월간 전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합계임
- ② 국내제작물 : 월간 전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7조에 의거 방송통신사무소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자문위원회의 국내제작물 판정을 받은 프로그램임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가중치 적용) : 해당 채널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주시청 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 편성시간의 150%으로 인정한 방송시간의 합계
 - ※ 주시청 시간대(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3항)
 - 평일 : 오후 7시 ~ 오후 11시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 ~ 오후 11시까지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가중치 미적용) : 해당 채널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합계
- ③ 외국제작물 : 월간 전체 외국제작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백분율

-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4) 대중음악

구 분	대중음악 전체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방송시간(분)	①	②	③
백분율	100%	④ %	⑤ %

- 대중음악은 프로그램 단위로 판단하여 적합합니다.

○ 방송시간

- ① 대중음악 전체 : 월간 전체 대중음악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합계임
- ② 국내제작물 : 월간 전체 국내제작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③ 외국제작물 : 월간 전체 외국제작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 음악프로그램 제작주체의 국적에 따라 국내제작, 외국제작물 구분함
 - 외국음악으로 구성된 음악 프로그램 또는 외국음악과 국내음악이 혼합 구성된 음악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음악 프로그램이 국내 방송사업자에 의해 기획, 제작되었다면 국내 제작으로 인정
 - 외국의 특정 음악프로그램을 직수입(더빙, 한글자막 포함) 또는 중계(녹화중계 포함) 방송하는 경우 외국제작으로 인정

○ 백분율

-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 참고사항

- 프로그램을 단위로 하여 비율을 산정함. 필러물 형태로 편성하는 소품이나 프로그램 전후에 삽입되는 음악이나 뮤직비디오는 대중음악 편성비율 산정에서 제외함

4. 기 타

구 분	비상업적 공익광고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방송시간(분)	분	분

- 직접사용채널이 복수인 경우 채널별로 분리하여 채널번호를 명기하고 비상업적 공익광고 방송시간을 각각 적도록 함
- 비상업적 공익광고(가중치 적용) : 주시청 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 편성시간의 150%로 인정하여 매월 편성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모든 시간을 합산하여 계산
 - ※ 주시청 시간대(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3항)
 - 평일 : 오후 7시 ~ 오후 11시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 ~ 오후 11시까지
- 비상업적 공익광고(가중치 미적용) : 매월 편성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방송시간 합계

1. 편성비율 산정 시 제외 가능 방송시간

프로그램명	방송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방송길이(분)	제외 사유

○ 편성비율 산정제외 방송시간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1조제4항에 의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수입한 외국의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비상방송,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또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은 제외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 국민 전체가 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하계 올림픽과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다.
- 국민 전체가 구 수의 100분의 7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하계아시아경기대회,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아시아축구연맹) 및 EAFF(동아시아축구연맹)가 주관하는 경기(월드컵축구 예선포함), 양 축구협회간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평가전(친선경기 포함)으로 한다.

2. 영화

가. 영화 목록

프로그램명	방송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방송길이(분)	제작국가	프로그램등급

○ 국내제작 영화의 기준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6조를 참조하도록 함

나. 외국 수입 영화 국적

프로그램명	국적 판단기준				국적 (3점 이상)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1점)	

- 방송사업자가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1점)의 국적을 기준으로 최소 3점 이상을 충족하는 국가를 제작 국가로 분류하되, 각 항목의 국적이 이중국적일 경우 이중국적 모두를 인정하고, 이로 인해 3점 이상 취득한 국가가 다수 발생할 경우 방송사업자가 국적을 선택하여 분류함. 이 때 제작사는 영화의 기획·제작 주체의 국적을 뜻함.

3 애니메이션

가. 애니메이션 목록

프로그램명	방송일	시작 시간	종료 시간	방송길이(분)		제작 국가	프로그램 등급	국내제작 인정일	신규 편성 여부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사후인정의 경우 인정일은 인정 예정일을 말합니다.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
- 방송통신사무소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을 받은 작품에 대해서만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

나.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 국적

프로그램명	국적 판단기준				국적 (3점 이상)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1점)	

- 주연의 국적은 제작사의 국적을 기재함.

(4쪽 중 제4쪽)

4. 대중음악

프로그램명	방송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방송길이(분)	제작국가	프로그램등급

- 외국 수입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기획·제작 주체의 국적으로 판단함

5. 비상업적 공익광고

공익광고명	광고주체	방송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방송시간(초)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 비상업적공익광고 기준(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무료로 방송하는 광고
 -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편성하는 광고
- 광고 주체를 정확히 기재하고, 광고 시간은 초 단위로 기재

()월 방송실시 결과(위성방송사업자)

1. 사업개요

법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운영채널(개)		직접사용채널번호	

2. 직접사용채널

- 직접사용채널이 복수인 경우, 본 항 이하를 채널별로 분리하여 각각 채널번호를 기재하고 채널별로 작성토록 함
- 직접사용채널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본 항 이하를 공란으로 남겨둠

가. 방송분야

구 분	전체방송	교양	오락
방송시간(분)	①	②	③
백분율	100%	④ %	⑤ %
주시청시간대(분)	⑥	⑦	⑧
백분율	100%	⑨ %	⑩ %

- 방송시간
 - ① 전체방송 : 월간 전체 방송시간의 총합임
 - ② 교양 : 월간 교양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③ 오락 : 월간 오락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백분율 : ④ 교양 : ②/①, ⑤ 오락 : ③/①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 주시청시간대
 - ⑥ 전체방송 : 월간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합계임
 - ⑦ 교양 : 월간 주시청시간대 교양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⑧ 오락 : 월간 주시청시간대 오락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 주시청시간대는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음
 - 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주시청시간대 백분율 : ⑨ 교양 : ⑦/⑥, ⑩ 오락 : ⑧/⑥
※ ⑨와 ⑩의 합계는 100%임

나. 국내제작물

1) 전체방송

구 분	전체방송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방송시간(분)	①	②	③
백분율	100%	④ %	⑤ %

○ 방송시간

① 전체방송 : 월간 전체 방송시간의 총합임

※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 의거 전체 방송시간에서 제외되는 프로그램을 편성한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방송시간을 제외한 방송시간을 기재함

② 국내제작물 :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③ 외국제작물 : 외국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외국의 특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국내에서 단순 더빙만을 삽입하는 경우 또는 단순(녹화) 중계 방송하는 경우에는 모두 외국제작으로 봄

○ 백분율 :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2) 영 화

구 분	영화전체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방송시간(분)	①	②	③
백분율	100%	④ %	⑤ %

○ 방송시간

① 영화전체 : 월간 전체 영화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합계임

② 국내제작물 : 월간 전체 국내제작 영화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국내제작 영화의 기준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6조를 참조하도록 함

③ 외국제작물 : 월간 전체 외국제작 영화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①=②+③

○ 백분율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3) 애니메이션

(4쪽 중 제2쪽)

구 분	애니메이션 전체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방송시간(분)	①	②	②	③
백분율	100%	④ %	④ %	⑤ %

○ 방송시간

- ① 애니메이션 전체 : 월간 전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합계임
- ② 국내제작물 : 월간 전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7조에 의거 방송통신사무소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자문위원회의 국내제작물 판정을 받은 프로그램임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가중치 적용) : 해당 채널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주시청 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 편성시간의 150%으로 인정한 방송시간의 합계
 - ※ 주시청 시간대(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3항)
 - 평일 : 오후 7시 ~ 오후 11시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 ~ 오후 11시까지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가중치 미적용) : 해당 채널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합계
- ③ 외국제작물 : 월간 전체 외국제작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백분율

-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 ④, ⑤의 합계는 100%임

4) 대중음악

구 분	대중음악 전체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방송시간(분)	①	②	③
백분율	100%	④ %	⑤ %

- 대중음악은 프로그램 단위로 판단하여 적습니다.

○ 방송시간

- ① 대중음악 전체 : 월간 전체 대중음악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합계임
- ② 국내제작물 : 월간 전체 국내제작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③ 외국제작물 : 월간 전체 외국제작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 음악프로그램 제작주체의 국적에 따라 국내제작, 외국제작물 구분함
 - 외국음악으로 구성된 음악 프로그램 또는 외국음악과 국내음악이 혼합 구성된 음악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음악 프로그램이 국내 방송사업자에 의해 기획, 제작되었다면 국내 제작으로 인정
 - 외국의 특정 음악프로그램을 직수입(더빙, 한글자막 포함) 또는 중계(녹화중계 포함) 방송하는 경우 외국제작으로 인정

○ 백분율

-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 참고사항

- 프로그램을 단위로 하여 비율을 산정함. 필러물 형태로 편성하는 소품이나 프로그램 전후에 삽입되는 음악이나 뮤직비디오는 대중음악 편성비율 산정에서 제외함

3. 기 타

구 분	비상업적 공익광고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방송시간(분)	분	분

- 직접사용채널이 복수인 경우 채널별로 분리하여 채널번호를 명기하고 비상업적 공익광고 방송시간을 각각 적도록 함
- 비상업적 공익광고(가중치 적용) : 주시청 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 편성시간의 150%로 인정하여 매월 편성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모든 시간을 합산하여 계산
 - ※ 주시청 시간대(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3항)
 - 평일 : 오후 7시 ~ 오후 11시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 ~ 오후 11시까지
- 비상업적 공익광고(가중치 미적용) : 매월 편성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방송시간 합계

1. 편성비율 산정 시 제외 가능 방송시간

프로그램명	방송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방송길이(분)	제외 사유

○ 편성비율 산정제외 방송시간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1조제4항에 의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수입한 외국의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비상방송,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또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은 제외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하계 올림픽과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다.
-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7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하계아시아경기대회,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아시아축구연맹) 및 EAFF(동아시아축구연맹)가 주관하는 경기(월드컵축구 예선포함), 양 축구협회간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평가전(친선경기 포함)으로 한다.

2. 영화

가. 영화 목록

프로그램명	방송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방송길이(분)	제작국가	프로그램등급

○ 국내제작 영화의 기준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6조를 참조하도록 함

나. 외국 수입 영화 국적

프로그램명	국적 판단기준				국적 (3점 이상)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1점)	

- 방송사업자가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1점)의 국적을 기준으로 최소 3점 이상을 충족하는 국가를 제작 국가로 분류하되, 각 항목의 국적이 이중국적일 경우 이중국적 모두를 인정하고, 이로 인해 3점 이상 취득한 국가가 다수 발생할 경우 방송사업자가 국적을 선택하여 분류함. 이 때 제작사는 영화의 기획·제작 주체의 국적을 뜻함.

3 애니메이션

가. 애니메이션 목록

프로그램명	방송일	시작 시간	종료 시간	방송길이(분)		제작 국가	프로그램 등급	국내제작 인정일	신규 편성 여부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사후인정의 경우 인정일은 인정 예정일을 말합니다.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
- 방송통신사무소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을 받은 작품에 대해서만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

나.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 국적

프로그램명	국적 판단기준				국적 (3점 이상)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1점)	

- 주연의 국적은 제작사의 국적을 기재함.

4. 대중음악

프로그램명	방송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방송길이(분)	제작국가	프로그램등급

○ 외국 수입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기획·제작 주체의 국적으로 판단함

5. 비상업적 공익광고

공익광고명	광고주체	방송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방송시간(초)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 비상업적공익광고 기준(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무료로 방송하는 광고
 -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편성하는 광고
 ○ 광고 주체를 정확히 기재하고, 광고 시간은 초 단위로 기재

()월 방송실시결과(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1. 사업개요

법인명(채널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채널구분	방송유형	채널성격	지상파방송 사업자 공급	방송프로그램 제공 형태
	☐ 텔레비전방송채널 ☐ 라디오방송채널 ☐ 데이터방송채널	☐ 기본채널 ☐ 유료채널	☐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일반 ☐ NVOD ☐ VOD ☐ 기타
주된 방송분야		채널 또는 주파수		

- 법인명(채널명) : 법인명을 쓰고 괄호 안에 채널명을 쓰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공급 :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해당됨'에 체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되지 않음'에 체크함
- 방송프로그램 제공 형태 :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기타'에 체크함
- 주된 방송분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주된 방송분야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함
- 채널 또는 주파수 : 채널번호가 고정되어 있을 경우 명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공란으로 남겨둠

2. 방송분야

구 분	전체방송	주된 방송분야 (주편성)	기타 방송분야 (부편성)	안내방송 /필러물 등	광고방송
방송시간(분)	①	②	③	④	⑤
백분율	100%	⑥ %	⑦ %	⑧ %	⑨ %

○ 방송시간

- ① 전체방송 : 월간 전체 방송시간의 총합임
- ② 주된 방송분야(주편성) :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 ③ 기타 방송분야(부편성) :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 ④ 안내방송/필러물 등 : 주된 방송분야, 기타 방송분야를 구분할 수 없는 안내방송/필러물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 ⑤ 광고방송 : 월간 광고방송시간의 합계임

○ 백분율

- ⑥ 주된 방송분야 : ②/① ⑦ 기타 방송분야 : ③/①
- ⑧ 안내방송/필러물 등 : ④/① ⑨ 광고방송 : ⑤/①
- ⑥ 내지 ⑨의 합계는 100%임

○ 참고사항

- 주된 방송분야 편성비율은 '주편성(②)/(주편성(②)+부편성(③))×100

3. 초방/순환

구 분	전체방송	초 방	순 환
방송시간(분)	①	②	③
백분율	100%	④ %	⑤ %

○ 방송시간

- ① 전체방송 : 월간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의 총합임
※ '2. 방송분야'의 전체 방송시간과 동일함
- ② 초방 : 해당 채널에서 최초로 방송된 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 ③ 순환 : 해당 채널에서 2회 이상 방송된 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 이전에 방송된 프로그램을 해당 월에 다시 편성하는 경우도 순환임

○ 백분율 : ④ 초방 : ②/① ⑤ 순환 : ③/①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4. 국내제작물

가. 전체방송

구 분	전체방송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방송시간(분)	①	②	③
백분율	100%	④ %	⑤ %

○ 방송시간

① 전체방송 : 월간 전체 방송시간의 총합임

※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 의거 전체 방송시간에서 제외되는 프로그램을 편성한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방송시간을 제외한 방송시간을 기재함

② 국내제작물 :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③ 외국제작물 : 외국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외국의 특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국내에서 단순 더빙만을 삽입하는 경우 또는 단순(녹화) 중계 방송하는 경우에는 모두 외국제작으로 봄

○ 백분율 :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나. 영 화

구 분	영화전체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방송시간(분)	①	②	③
백분율	100%	④ %	⑤ %

○ 방송시간

① 영화전체 : 월간 전체 영화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합계임

② 국내제작물 : 월간 전체 국내제작 영화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국내제작 영화의 기준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6조를 참조하도록 함

③ 외국제작물 : 월간 전체 외국제작 영화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①=②+③

○ 백분율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다. 애니메이션

구 분	애니메이션 전체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방송시간(분)	①	②	②	③
백분율	100%	④ %	④ %	⑤ %

○ 방송시간

- ① 애니메이션 전체 : 월간 전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합계임
- ② 국내제작물 : 월간 전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7조에 의거 방송통신사무소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자문위원회의 국내제작물 판정을 받은 프로그램임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가중치 적용) : 해당 채널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주시청 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 편성시간의 150%으로 인정한 방송시간의 합계
 - ※ 주시청 시간대(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3항)
 - 평일 : 오후 7시 ~ 오후 11시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 ~ 오후 11시까지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가중치 미적용) : 해당 채널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합계
- ③ 외국제작물 : 월간 전체 외국제작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백분율

-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 ④, ⑤의 합계는 100%임

라.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구 분	전체방송	신규편성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방송시간(분)	①	②	③
백분율	100%	④ %	⑤ %

○ 방송시간

- ① 전체방송 : 월간 전체방송시간의 총합임
 - ※ <4. 국내제작물 가. 전체방송>의 전체방송시간(①)과 동일하게 기재함
- ② 신규편성 국내제작 애니메이션(가중치 적용) : 해당 채널에서 신규로 편성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합계임(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 편성시간의 150%으로 인정)
 - ※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
 - 평일 : 7시~9시, 17시~20시
 - 주말 및 공휴일 : 7시30분~11시, 14시~20시
- ③ 신규편성 국내제작 애니메이션(가중치 미적용) : 해당 채널에서 신규로 편성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합계임

○ 백분율 : ④ 가중치 적용 : ②/① ⑤ 가중치 미적용 : ③/①

마. 대중음악

구 분	대중음악 전체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방송시간(분)	①	②	③
백분율	100%	④ %	⑤ %

- 대중음악은 프로그램 단위로 판단하여 적용합니다.
- 방송사업자별로 해당 부분만 적용합니다.

○ 방송시간

- ① 대중음악 전체 : 월간 전체 대중음악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합계임
- ② 국내제작물 : 월간 전체 국내제작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③ 외국제작물 : 월간 전체 외국제작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음악프로그램 제작주체의 국적에 따라 국내제작, 외국제작물 구분함

- 외국음악으로 구성된 음악 프로그램 또는 외국음악과 국내음악이 혼합 구성된 음악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음악 프로그램이 국내 방송사업자에 의해 기획, 제작되었다면 국내 제작으로 인정
- 외국의 특정 음악프로그램을 직수입(더빙, 한글자막 포함) 또는 중계(녹화중계 포함) 방송하는 경우 외국제작으로 인정

○ 백분율

-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 참고사항

- 프로그램을 단위로 하여 비율을 산정함. 필러물 형태로 편성하는 소품이나 프로그램 전후에 삽입되는 음악이나 뮤직비디오는 대중음악 편성비율 산정에서 제외함

5. 기 타

구 분	비상업적 공익광고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방송시간(분)	분	분	분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만 해당합니다.

- 비상업적 공익광고(가중치 적용) : 주시청 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 편성시간의 150%로 인정하여 매월 편성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모든 시간을 합산하여 계산

※ 주시청 시간대(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3항)

- 평일 : 오후 7시 ~ 오후 11시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 ~ 오후 11시까지

- 비상업적 공익광고(가중치 미적용) : 매월 편성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방송시간 합계

1. 편성비율 산정 시 제외 가능 방송시간

프로그램명	방송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방송길이(분)	제외 사유

○ 편성비율 산정제외 방송시간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1조제4항에 의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수입한 외국의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비상방송,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또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은 제외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하계 올림픽과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다.
-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7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하계아시아경기대회,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아시아축구연맹) 및 EAFF(동아시아축구연맹)가 주관하는 경기(월드컵축구 예선평합), 양 축구협회간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평가전(친선경기 포함)으로 한다.

2. 영화

가. 영화 목록

프로그램명	방송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방송길이(분)	제작국가	프로그램등급

○ 국내제작 영화의 기준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6조를 참조하도록 함

나. 외국 수입 영화 국적

프로그램명	국적 판단기준				국적 (3점 이상)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1점)	

- 방송사업자가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1점)의 국적을 기준으로 최소 3점 이상을 충족하는 국가를 제작 국가로 분류하되, 각 항목의 국적이 이중국적일 경우 이중국적 모두를 인정하고, 이로 인해 3점 이상 취득한 국가가 다수 발생할 경우 방송사업자가 국적을 선택하여 분류함. 이 때 제작사는 영화의 기획·제작 주체의 국적을 뜻함.

3 애니메이션

가. 애니메이션 목록

프로그램명	방송일	시작 시간	종료 시간	방송길이(분)		제작 국가	프로 그램 등급	국내 제작 인정일	신규 편성 여부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사후인정의 경우 인정일은 인정 예정일을 말합니다.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
- 방송통신사무소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을 받은 작품에 대해서만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

나.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 국적

프로그램명	국적 판단기준				국적 (3점 이상)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1점)	

- 주연의 국적은 제작사의 국적을 기재함.

4. 대중음악

프로그램명	방송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방송길이(분)	제작국가	프로그램 등급

- 외국 수입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기획·제작 주체의 국적으로 판단함

5. 비상업적 공익광고

공익광고명	광고주체	방송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방송시간(초)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 비상업적공익광고 기준(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무료로 방송하는 광고
 -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편성하는 광고
- 광고 주체를 정확히 기재하고, 광고 시간은 초 단위로 기

6.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방송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방송길이(분)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만 해당합니다.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월 방송실시 결과(중계유선방송사업자)

1. 사업개요

법인명(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일일평균 방송시간			
중계채널 수		공지채널 번호	

2. 중계채널 현황

순 서	채널번호	방송채널명	비고
1			
2			
3			
4			
5			
6			
7			

• 비교란에는 동시재송신/녹음·녹화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월 방송실시결과(음악유선방송사업자)

1. 사업개요

법인명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2. 방송시간

전체방송	시간	분
------	----	---

○ 월간 전체 방송시간의 총합을 기재

()월 방송실시 결과(전광판방송사업자)

1. 사업개요

법인명(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전광판 소재지 및 설치형태			

- 전광판 소재지는 구체적(시·군·구/동, 건물명 등)으로 적습니다.
- 설치형태는 가로/옥탑/지주형으로 구분합니다.

2. 방송분야

구분	전체방송	보도	정보	상업광고	비상업적 공익광고	기타
방송시간(분)	①	②	③	④	⑤	⑥
백분율	100%	⑦ %	⑧ %	⑨ %	⑩ %	⑪ %

- 기타란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공익광고 의무편성비율을 적습니다.

○ 방송시간

- ① 전체방송 : 월간 전체 방송시간의 총합임
 - ② 보도 : 월간 보도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③ 정보 : 월간 정보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④ 상업광고 : 월간 상업광고의 방송시간 합계임
 - ⑤ 비상업적공익광고 : 월간 비상업적공익광고의 방송시간 총합임
 - ⑥ 기타 : 보도·정보프로그램 및 상업광고·비상업적공익광고를 제외한 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 아울러 참고표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상의 비상업적공익광고 의무편성비율을 기재함

○ 백분율

- ⑦ 보도 : ②/①
- ⑧ 정보 : ③/①
- ⑨ 상업광고 : ④/①
- ⑩ 비상업적공익광고 : ⑤/①
- ⑪ 기타 : ⑥/①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관련 법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조사하는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관련 법령 조항에 한함

☑ 방송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25호, 2021. 6. 8, 일부개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 ④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 ⑤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② 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③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시청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 ④방송사업자는 다양한 국제문화 수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간 방송되는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 ⑤ 방송사업자가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구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제72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중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④제1항에 따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제73조(방송광고등)

- ④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보존)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일지에 방송내용(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방송 실시결과를 방송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제14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 ②방송사업자는 방송(재송신은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예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후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 따른 방송일지의 기록 및 방송실시결과와 제2항에 따른 사업자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업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5조(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6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8.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9. 제7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편성비율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10. 제73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17.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또는 방송실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1658호, 2021. 4. 30, 일부개정]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②제1항에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③법 제6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시청시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④법 제6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사업자별로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라 편성할 것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다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수 있다.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2.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상 편성할 것

⑤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른 공공채널과 영어 등 외국어를 주 언어로 하여 국내채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 등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제4항제2호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
3.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② 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 또는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영화: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애니메이션: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3. 대중음악: 당해 채널의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

③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지상파방송사업자(법 제7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으로 허가받은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상 신규로 편성해야 한다.

1. 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3.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 ⑤ 방송사업자(특정한 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한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편성해야 한다.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제2항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제5항에 따른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의 구별기준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의 형태, 기획 및 제작인력의 구성, 제작에 소요된 투자재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⑧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편성비율 산정 시 특정 방송프로그램에 가중치를 두거나 전체 방송시간에서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영화는 제외하며, 이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과 편성비율 산정 시 특정 방송프로그램에 가중치를 두거나 전체 방송시간에서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9조(방송광고)

③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채널의 공익적 특성, 방송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송사업자 : 채널별로 매월 전체방송시간(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전체 방송내용물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2. 전광판방송사업자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

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무료로 방송하는 광고

2.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 비용으로 제작·편성하는 광고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의 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3의3.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

4. 법 제108조제1항제4호·제7호의3·제15호·제17호·제18호 및 제25호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108조제1항제15호 및 제25호의2에 따른 사항은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69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방송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7호, 2021. 2. 23, 일부개정]

제20조(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송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에 따른 월간 방송실시 결과를 작성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매월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에 따른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월간 방송실시 결과의 작성·제출 및 제2항에 따른 방송일지의 기록·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방송실시결과와 제출 및 방송일지의 기록·비치는 각각의 채널을 단위로 하여야 한다.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방송채널 단위(방송채널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구역 단위(허가받은 방송구역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전광판방송사업자의 경우: 전광판의 소재지 단위(전광판의 소재지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 ④ 「방송법」 제69조,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 제76조의3, 제76조의5,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의2 및 제83조는 콘텐츠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 국내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광고, 협찬고지, 프로그램의 공급,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재송신, 방송내용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 ⑤ 제4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와 제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20조(「방송법 시행령」의 준용)

- 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2조의2를 준용하되, 제16조제2항 또는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의 전문편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 ④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7조를 준용하되,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의 비율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 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 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광고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9조를 준용하되,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광고의 허용범위 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1. 1.]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1-5호, 2021. 6.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방송법」 제7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7항·제8항, 「방송법」 제72조제1항·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3항·제5항, 「방송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및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비율,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및 절차, 국내제작 영화의 인정기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의 국적 구별기준,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①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전문편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나. 종합편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3.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이나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4.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②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채널별로 연간 전체 영화방송 시간의 100분의 4 이상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5 이상.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③ 방송사업자는 별표2를 충족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이상 편성하여야 한다.(이 고시에서 "애니메이션"이란 스스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연속 촬영하여 제작하는 실사 영상과 달리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2D, 3D, CG, 스톱모션 등 다양한 기법과 매체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움직이는 영상이미지를 창출하는 작업물을 말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5 이상.
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4. 교육 또는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는 제1호와 제2호의 규정과 관계없이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가. 교육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8 이상.

나.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 이상.

④ 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국내제작 대중음악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둘 이상의 음악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오디오 부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사업자별로 적용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제2항을, 애니메이션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제3항을, 대중음악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제4항을 각각 적용한다.

제4조(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① 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분류에 따른 방송사업자군 내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최초로 편성하는 경우 이를 신규편성으로 인정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2조제1항 2호의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100분의 50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②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 이상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④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1. 방송사업매출액 5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2. 방송사업매출액 50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5 이상

3. 방송사업매출액 6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7 이상

4. 방송사업매출액 700억원 이상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0 이상

⑤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방송사업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1. 방송사업매출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2. 방송사업매출액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6 이상

3. 방송사업매출액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8 이상

4. 방송사업매출액 200억원 이상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0 이상

⑥ 제4항 및 제5항 각호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의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 제3조 제1항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된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내국인(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내국인이 소유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출자한 방송프로그램으로 별표1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

2. 외국과 공동으로 기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중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

협정에 따라 국내제작으로 승인받은 방송프로그램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송프로그램 기획서
2.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에 한하며 한글본을 포함)
3. 방송프로그램의 줄거리 및 대본
4. 제작자, 연출자, 작가, 주요 연기자(조연을 포함) 및 영상, 음악, 음향, 미술·CG, 편집 책임자의 국적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의 기여를 증빙하는 서류
5. 방송프로그램 사본(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하여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방송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방송되는 것과 해외에서 방송되는 것을 모두 포함)
6.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제작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전 승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전 승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방송프로그램 기획서
 - 나.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수익분배권이 명시된 한글본을 포함)
 - 다. 방송프로그램의 줄거리 및 대본
 - 라. 제작자, 연출자, 작가, 주요 연기자(조연을 포함) 및 영상, 음악, 음향, 미술·CG, 편집 책임자의 국적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의 기여를 증빙하는 서류
 - 마. 주간 단위 촬영·작업 계획 및 촬영 장소
 - 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전 승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2. 사후 승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후 승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방송프로그램 기획서
 - 나.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수익분배권이 명시된 한글본을 포함)
 - 다. 방송프로그램의 줄거리 및 대본
 - 라. 제작자, 연출자, 작가, 주요 연기자(조연을 포함) 및 영상, 음악, 음향, 미술·CG, 편집 책임자의 국적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의 기여를 증빙하는 서류

마. 방송프로그램 사본(방송 편성을 목적으로 제작된, 크레딧이 명기된 국내 및 해외 방송 프로그램 사본)

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후 승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신청 접수 후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일내에 심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일을 9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내제작 인정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문서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항의 기일을 준용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해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국내제작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 따라 신청된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여부를 자문받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하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국내제작 영화의 인정기준) 제3조제2항의 국내제작 영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한 영화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공동제작영화및예술영화의인정등에관한규정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 영화

제7조(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 제3조 제3항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애니메이션 제작에 소요된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내국인이 출자한 애니메이션으로 별표2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
2. 외국과 공동으로 기획·제작한 애니메이션 중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 협정에 따라 국내제작으로 승인받은 애니메이션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확인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확인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제작참여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애니메이션 기획서
2.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에 한하며 한글본을 포함)
3. 애니메이션 줄거리 및 대본
4. 애니메이션 캐릭터집 및 배경집

5. 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
 6. 외국 공동제작사 확인서(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에 한함)
 7. 애니메이션 사본(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하여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방송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방송되는 것과 해외에서 방송되는 것을 모두 포함)
 8. 내국인이 저작권 및 수익분배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9.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제작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등은 제5조 제3항을 준용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일 내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일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 ⑤ 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불인정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재심사를 문서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제4항의 기일을 준용한다.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 여부를 자문받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수입한 외국의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영 제57조제5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연간 각 4편 또는 각 240분 이내로 편성한 방송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2(수입한 외국의 영화·애니메이션의 국적 구별기준)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의 국적은 별표3에서 정한 기준으로 구별한다.

제9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1. 한국방송공사.
 - 가. 지상파제1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9 이상
 - 나. 지상파제2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3. 제2호의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5. 한국교육방송공사: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6 이상
6.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당해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2 이상(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해당 각호에 따른다.)
7.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 ②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당해 채널별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0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당해 채널별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2(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① 제9조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다음 각 호 중 3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외주제작사가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한 방송프로그램 이어야 한다.

1. 외주제작사가 작가(방송프로그램의 극본, 구성대본 등을 집필하는 자로 여러 명이 집필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경우
2. 외주제작사가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경우
3. 외주제작사가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경우
4. 외주제작사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조달하는 경우
5. 외주제작사가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제반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 판매에 따른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다음 각 호 중 3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1. 방송권 판매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주제작사에게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전송권 판매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주제작사에게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복제·배포권 판매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주제작사에게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공연권 판매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주제작사에게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5. 2차적저작물작성권 판매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주제작사에게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에 대해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경우"라 함은 교섭을 통해 계약의 실질적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여부를 자문받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하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구역이 국외이거나 재외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방송프로그램 단위로 시청자가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으로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2 이상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그 밖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으로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4백억원 이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0분의 1 이상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방송사업자 :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0.5 이상

제11조(편성비율 산정 및 산정제외 방송시간) ① 제3조제2항의 국내제작 영화의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에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 ② 제3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8항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③ 제4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의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다음 각호의 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1. 평일 : 7시~9시, 17시~20시

2. 주말 및 공휴일 : 7시30분~11시, 14시~20시

④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방송법시행령」제50조제1항의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비상방송,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 또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은 제외할 수 있다.

⑤ 제9조제1항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촬영원본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10으로 인정한다.

⑥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에 교양분야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10으로 인정한다.

⑦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체결한 계약서에 외주제작사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30으로 인정한다.

⑧ 제10조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에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다만,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은 다음 각호의 시간에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하는 경우에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1. 평일 : 11시부터 15시까지

2.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 11시부터 16시까지

제12조(신기술 시험방송 채널에 대한 특례) 방송 신기술을 적용하여 시험방송하는 채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3조(편성비율 적용기간) 편성비율이 적용되는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상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한 방송사업자에게는 편성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월간 :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

2. 반기간 : 1월 1일부터 6월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연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방송업무처리지침

[시행 2020. 11. 18.] [중앙전파관리소예규 제168호, 2020. 11.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방송업무에 관한 관련 법령 및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3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시행령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2. 법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보존)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방송실시결과와 제출 등)에 따른 방송내용의 기록·보존과 방송실시결과와 제출여부 관리·감독
3. 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제72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제58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관리·감독
4. 법 제108조(과태료) 및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전파관리소 관할 구역

제3조(업무 수행기관) ① 이 지침에 따른 업무수행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 세칙」에서 정한 방송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별 관할구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4조(방송사업자 자료관리) 본소는 법 제14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현황자료를 현행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지소에 연 2회 이상 통보하여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대한 조사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관리·감독

제5조(월간 방송실시결과 접수) ① 지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8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방송사업자에게 월간 방송실시결과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지소에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본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2.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방송실시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제6조(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조사) ① 지소는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방송실시결과에 대해서 법 및 고시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소는 필요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방송실시결과 이외의 자료 제출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1. 근거 법령
2.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조사를 위한 요구자료
3. 제출기한 및 방법
4.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법 제108조 및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5. 제출된 자료가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조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고지

③ 방송법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조사결과 보고) ① 지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분기별로 수합하여 매분기 익익월 말일까지 본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소는 조사한 내용이 [별표 2]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본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및 채널명
2. 주소 및 대표자 성명
3. 대상기간 내의 위반내용(방송실시결과 등)
4. 방송국 허가증·사업자 등록증 및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8조(조사결과 보고사항 조치) 본소는 지소가 보고한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방송사업자의 위반사항이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2. 방송사업자의 위반사항이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제3장 방송관련 법규 위반자 과태료 부과절차 등

제9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본소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제출기한
 5. 질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6.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당초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이 감경된 과태료 납부 고지서. 이 경우 납부 고지서에 표시된 과태료 납부 기한은 의견 제출 기한과 동일하게 통보
 8.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본소는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 ⑤ 본소는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질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질서법 제8조(위법성 착오)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0조(과태료의 부과) ① 본소는 제9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명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와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 가. 질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나. 질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다. 질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라. 질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 마. 질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6. 제13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과태료 부과기준) 방송법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3조(이의제기) 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14조(법원의 통보) ① 본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15조(자문위원회) ① 본소는 주된 방송분야 확인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응하여 자문한다.

1. 법 제69조제4항 및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편성한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 확인
2. 주된 방송분야 확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소장이 주된 방송분야 확인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6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1.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방송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방송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3년 이상 교수의 직위(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한함)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사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소장이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소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비밀 준수 등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 한다.

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용 위반조사 업무 담당계장을 간사로 둔다.

제17조(자문위원 임기 등) ① 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하지 않을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위원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자문회의에 연 3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할 때
3. 형벌 등 기타 품위손상으로 자문위원으로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④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과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운영) 자문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0조(자문위원의 제척) 자문위원은 본인 또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가 제작에 관여된 방송프로그램의 심사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문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21조(회의록 작성)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할 경우 자문위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

제22조(비밀의 보호) 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이권개입 금지) 자문위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수당 등 지급)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022

알기 쉬운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길라잡이

인쇄일	2021년 10월
발행일	2021년 10월
발행인	이상훈 중앙전파관리소 소장
기획·편집	이봉호 전파관리과 과장 최석종 사무관 박소현 주무관
발행처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05830) TEL) 02-3400-2243 FAX) 02-3400-2289 www.crms.go.kr

〈비매품〉

